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2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17일

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
·가급, 나급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30만원씩 인상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
-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12512-181('03.6.14)호 -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계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료직렬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.
- 지난 2003. 6월 행정자치부의 수당인상 지침에 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